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1.20.(화) 11:00 < 1.21.(수) 조간 > 배포 2026.1.20.(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 기업 대상 법령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화)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 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덤핑조사지원과	책임자	과장 김영윤(044-203-3860)
		담당자	사무관 이주혜(044-203-386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 개요**

1. 개 요

□ **(일시)** ‘26. 1. 20(화) 14:00 ~ 15:00

□ **(장소)**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총 70명 내외

○ 정부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무역조사실장 등

○ 업계 :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중인 품목 관련 기업

○ 기타 : 업종별 협회 통상담당자, 대리인 등

□ **(주요내용)** 우회덤핑 제도 확대(제3국 조립·가공 등에 대한 규제 신설)에 따른 관세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및 조사신청 관련 의견수렴

2.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분)	▪ 모두 발언	서가람 상임위원 (무역위원회)
14:05~14:15 (10분)	▪ 발표1 : 우회덤핑 방지제도 및 관세법령 주요 개정사항 소개	김영윤 과장 (무역위원회)
14:15~14:35 (20분)	▪ 발표2 : 우회덤핑 신청 안내사항	윤영원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14:35~15:00 (25분)	▪ 질의응답 및 토론	全 참석자

참고2 **우회덤핑 방지제도 개요**

□ 우회덤핑 방지제도

○ 우회덤핑 행위를 통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물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 우회덤핑 행위 유형

① **(경미한 변경)**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26.1.1., '공급국 내' 장소적 제한 삭제)

* (판단기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용도, 생산설비 차이,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등

② **(제3국 조립·가공)**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부분품을 제3국에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26.1.1., 신설)

* (판단기준) 조립·가공 공정의 성격, 제품의 가격 중 조립·가공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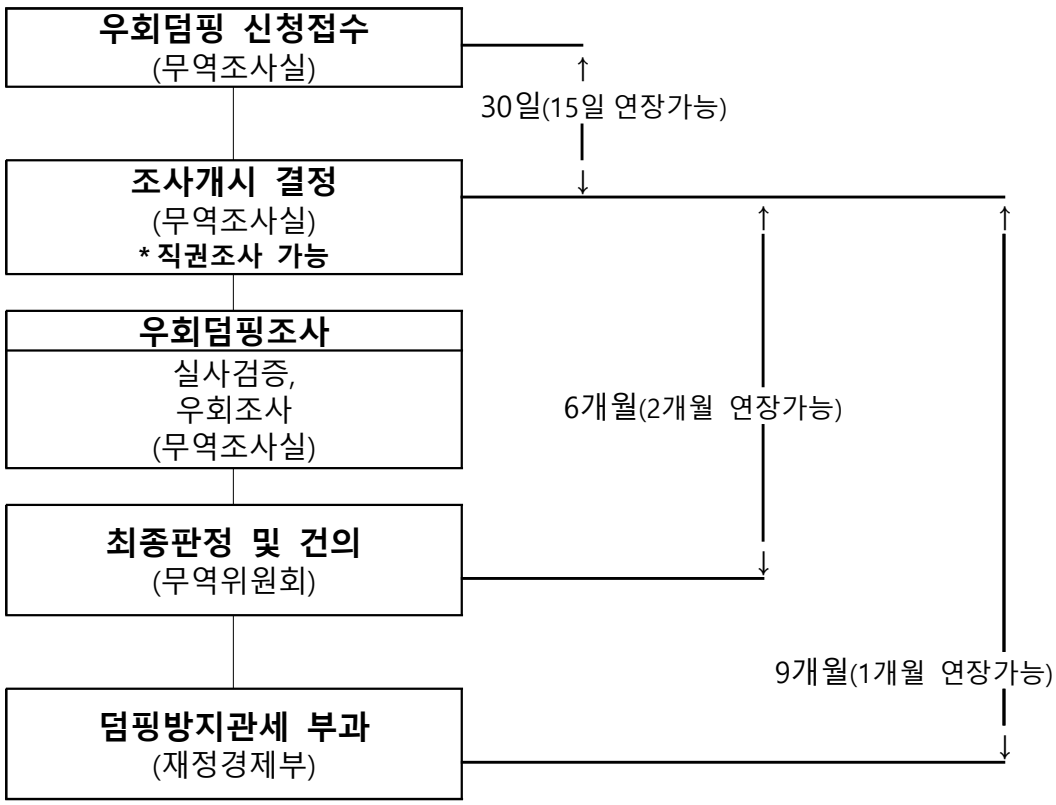
□ 우회덤핑 조사 절차